

의료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내용

의료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내용

1. 의료법 시행령

□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, 업무의 위탁 신설(§11)

< 법률 개정내용 >

- ◇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(§ 25),
 - ◇ 신고수리 업무는 **관련단체에 위탁**(§ 25)
 - ◇ 복지부장관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**면허의 효력을 정지**할 수 있음(§ 66④)
- ※ 시행 : 2012.4.29.

- (개 정) 신규 면허자는 면허증을 받은 다음 해의 12월말까지, 기존 면허자는 최초 신고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취업 상황, 근무 기관, 보수교육이수 여부 등을 신고
- 신고수리 업무는 **각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**

□ 의료인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·운영(§11조의2, 11조의3)

< 법률 개정내용 >

- ◇ 의료인 중앙회는 소속 의료인의 **품위손상행위**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(§ 66조의2)
- ※ 시행 : 2012.4.29.

- (개 정) 윤리위원회는 경력 10년이상인 회원 등 11명으로 구성,

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

- 회의는 재적위원 2/3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

□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의 범위(§24)

< 법률 개정내용 >

- ◇ 의료광고 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**교통시설·교통수단, 전광판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**를 추가(§ 57)
- ※ 시행 : 2012.8.5.

- (개 정) 인터넷뉴스서비스, 인터넷방송* 및 주요 포털사이트**를 사전심사를 받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

*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, ②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'방송' 'TV' 또는 '라디오'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통시키는 정보, ③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

**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가 적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일평균 10만이상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다음·네이버 등 146개, 매년 방통위 조사·발표

2. 의료법 시행규칙

□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서식 표준화(§9)

- (현 행)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*을 명시

* 환자의 인적사항, 병명, 치료에 대한 소견, 의료인 면허 등

- (개 정) 표준 서식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식으로 증명이 되도록 사용자 편의 제공

□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기준 완화(§19조의4)

- (현 행) 자본금 1억원을 갖추어 복지부장관에게 등록

- (개 정) 관광진흥법에 따라 **일반여행업 등록**에 필요한 자본금을

1억이상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 면제

* 현행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규모는 2억원

□ 의료인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(\$20~22)

○ (현 행)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이수

* 불이행시 과태료 50~70만원

- **보수교육 면제대상**은 의과대학 등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자, 군복무 중인 자, 전공의, 대학원 재학생,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

○ (개 정)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이수, 다만 5년 이상 연속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

* 보수교육 미이수로 신고의무 불이행시 신고할 때 까지 면허효력 정지

- **보수교육 면제대상**은 전공의, 의과대학 등 대학원 재학생, 당해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 및 복지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자, 6개월이상 환자진료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유예

□ 의료기관 명칭표시 규제 완화(\$40)

○ (현 행) 고유명칭 + 중별명칭 형태로 한글 사용만 허용

* (예시) 서울복지 의원

○ (개 정) 기존 명칭표시에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의 진료편의 및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 지원

* (예시) 서울복지 의원 seoul welfare clinic